

특수 건물의 화재보험 계약은 보험가입금액의 사전평가제도와 Co-Insurance (실손보상 특별약관)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므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의 사례는 손해사정결과 초과보험현상이 일어나 한국보험공사에 분쟁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 처리한 사례이다.

금년 6월 23일 대구지부로부터 화재발생 통지를 받고 당일 오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피보험자인 D산업은 현재의 J사장이 1954년 설립하여 34년의 역사를 갖고 방모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체였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회사 설립 당시인 1954년 J사장이 직접 신축한 건물로서 첫눈에도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매우 단단하게 지었다고 판단되었다. J사장은 지금은 주거 및 상업지역에 불품없이 서있지만 신축 당시에는 모

양을 내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단단하게 지은 건물이라며 매우 아쉬워 하였다.

사고 건물은 D산업이 최근까지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사세가 확장됨에 따라 인근 경산읍으로 공장을 이전해 사고 당시에는 봉제업을 하는 D섬유 등 몇개 업체에 임대하고 있었다.

사고는 D섬유와 C샤링이 임차한 부분에서 발생하였으며, 관계 기관에서는 임차회사 종업원을 중심으로 화인을 조사하였으나 원인불명으로 종결하고 말았다.

피보험자의 아들인 J상무와 건물을 한바퀴 돌아보니 사무실 부분과 외벽부분만 온전하고 건물의 내부는 거의 타버렸다.

J사장과 J상무에게 위로의 인사를 하고 건물의 복구방안을 얘기해 보니, 건물 소재지 부근이 이제는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공장의 입지조건에 맞지 않아 자금사정이 허락하면 건물

을 철거하고 빌딩을 신축하였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현장 조사를 마치고 보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설명을 한 후 K손해사정회사에 손해액 사정을 의뢰하였다.

20일후 K손해사정회사로부터 손해사정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검토한 바, 1954년 신축하여 33년11개월 경과함에 따라 경년감가율이 51.2%에 이르러 신축비는 1억1천7백95만원이지만 보험가액은 5천7백54만원 (보험가입금액은 특수건물시가기준액의 80%를 적용해 8천1백38만원), 손해액도 수리비는 7천5백15만원이나 보험가액과 같은 감가율을 적용하여 3천6백66만원(보험가액의 63.7%)으로 산출되었다.

나는 손해사정 보고서를 검토한후 J상무에게 전화하여 화재증명원을 조속히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개략적인 손해액과 보험금 산출내역을 설명하였다. 이에 J상무는 보험금이 생각

손해보상실무

D 산업의 초과보험사례



강 병 문
(본 협회 업무부 대리)



보다 적게 사정된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화재증명원은 발급받은대로 보내줬다고 답하였다.

며칠 후 화재증명원이 도착되어 당일 보험금 지급서류를 결제 올리고 마침 대구에 출장할 일이 있어 D산업을 방문하고 J상무를 만나 손해사정보고서 1부를 전해 주며 사정내역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정상무는 사정내역에 대해 납득은 하면서도 특수건물시가 기준액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초과보험이 되는 데에는 쉽게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J상무의 주장은 특수건물은 사전에 보험가입금액을 평가하여 계약한 만큼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이어야하며, 손해액도 보험가액이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야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해 첫째, 특수건물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정가액, 상장법인의 장부가액, 특수건물시가기준액 등 각기 다른 세가지의 기준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만큼 '보험가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가액'으로 하는 보험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둘째, 화재보험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액을 확정하는 기평가보험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가액산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 계약건수에 비하여 사고발생 건수는 극히 적고 사고발생시에도 적절한 보험가액의 산출이 가능하고 사전 평가에 따르는 비용이 결국 보험계약자에게 부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째, 보험가액과 손해액에 경년감가하는 것은 사고당시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보험가액)하고 손해의 복구로인한 보험목적의 경제적 가치증대를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J상무는 대부분 납득할 수 있는데 특수건물의 보험에서 초과보험 현상이 나타난 것에는 불만이라고 하였다.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사정통지서를 발송한 지 1개월이 경과한 후 D산업의 민원서류를 접수한 한국보험공사로부터 이에 대한 처리경위와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보험자측의 민원내용은 첫째, 건물의 85%가 피해를 입었는데 전손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둘째, 자신이 산출한 손해액은 5천5백94만원이다.(이 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의 68.7%임) 세째, 모든 것을 접어두더라도 특수건물을 수년간 초과보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피보험자가 작성한 손해견적서가 첨부되었다.

나는 그간의 처리경위와 함께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한국보험공사에 제출하였다.

첫째, 보험의 목적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산정, 보상하므로 금번 사고는 전손으로 볼 수는 없다.

둘째, 피보험자의 견적서는 전기공사를 비롯한 몇가지 공사가 실제보다 물량과 단가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손해사정회사의 물량산출근거 첨부) 세째, 보험가입금액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하여 해당 보험료를 환불하겠다.

이를 검토한 한국보험공사는 당 협회의 보험금사정은 잘못이 없으니 초과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환불조치하라고 판정하였다.

판정결과에 따라 협회는 보험금과 산출된 환급보험료를 대구지부를 통하여 지급하고 D산업의 보험사고를 종결하였다.

나는 D산업의 화재사고 처리를 종결하면서 이 건이 자체에서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보험감독기관의 분쟁에 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며 다음의 몇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손해사정 담당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보다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제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보험의 필요성을 실감케하여 보험수요의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계약 담당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가능한 한 충분히 보험의 목적을 당사·확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조언함으로써 초과보험이나 일부보험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문화재보험약관도 1987년 재조달가액특별약관이 인가되어 사용중이므로 손해액에 경년감가를 적용을 배제하여 실제 수리비를 보상하는 이 특약의 사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권유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 특약은 감가율 50% 미만의 물건에만 적용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M)